

문서번호 : 12-11-소수-01
수 신 :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의원, 이목희 의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제 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관련 정책법안 의견서
전송일자 : 2012. 11. 21. (수)
전송매수 : 쪽(표지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관련 정책법안 의견서

1. 귀 보건복지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본 모임')은 매년 가을 입법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분야별 저지법안과 촉구법안을 선정한 의견서를 발표해왔습니다. 또한 2008년, 2012년 총선에는 개혁입법과제를 발간하여 국회 입법활동의 구체적인 제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4. 고맙습니다.

< 첨부. 의견서 >

2012년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염형국 (직인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정책법안 의견

1. 현 상황의 문제점 및 주요 입법방향

가. 현 상황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 부양의무자 일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38만명 중 3만 3277명에 대한 보장이 중지되었고, 14만명은 급여가 삭감됨. 2011년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8만 4908명 가운데 61%인 5만 1820명이 실제로는 극빈층인데도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탈락됨.
-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103만명에 이르지만, 이들 가운데 70%는 부양의무자로부터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¹⁾
- 보건복지부 지침 및 행정관행은 부양의 실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조사를 우선 반영한 이후 이에 대해 수급당사자가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 즉 가족관계의 단절을 증빙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수급신청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여부가 결정됨. 또한 부양의무자가 본인가구 및 부양대상자га구의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 부양이 곤란한 부양의무자까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음.
- 2012. 8. 수급 중단을 통보받은 노인이 거제시청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후의 복지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생계의 극단에 내몰린 상황임.
-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그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함(동조 제3항).
- 비계측연도에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물가상승분 정도만 올려 국민평균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 2008년에는 최저생계비가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준까지 하락함. 계측연도에도 중소도시에 전세로 거주하는 4인가구가 계측조사 시 표준가구로 설정되어 표준가구의 1개월 소비내역이 기준이 되므로 가구특성(장애인이나 아동 포함 가구), 지역특성(지역별 생활비나 주거비의 격차)이 반영되지 않음.
-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법 제24조, 시행령 제3조의

1) 한겨레신문 2012. 10. 2. 사설 “저소득층을 벼랑으로 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2)로 법에 명문화한 입법취지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이전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자는 의미이나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급여 내지 사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나. 주요 입법 방향

1)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와 보장비용 징수기준으로 전환

- 미국, 영국, 스웨덴 등 국가들에서는 핵가족 상호간에만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별도 가구에는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아니라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규정을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요건에서는 제외하며,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나 보장비용 징수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야 함.
-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에 관한 조사는 해당 조항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장기관이 비용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조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상대빈곤선의 도입)

-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제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 비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하여야 함.

3)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연계지원 및 의료급여 등 신설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기관의 조사, 관리업무를 의무화하고 차상위계층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거나 의료급여의 수급권을 인정(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의 2 신설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행령으로 신설). 또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를 법률상

의무화함.

2. 빈곤 관련 각 대선후보의 정책, 공약 개관2)3)

<p>박근혜 후보(새누리당)</p>	<p>답변 없음(아래는 박근혜 후보의 공식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2011. 11. 1. 국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노인, 장애) -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모든 고용 및 복지 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p>(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공적 고용서비스,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충분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p>
<p>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려우며, 국민정서와도 괴리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할 것임 ▶ 수급자 선정 단계에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유무를 따지지 않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수급자 선정(이후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구상권을 청구)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필요함 ▶ 아울러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안전망도 다양화 하여 저소득층, 위기계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다원화하는 방식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여갈 것
<p>안철수 후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만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급여내역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삭감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층을 절망하게 하고 있음.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로잡아 갈 것임.

2. 각 당의 대선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입법안에 대한 개관4)

2) 별첨 비교표 참조

3) 민변은 사전에 이 분야와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세 후보에게 모두 보냈으나 박근혜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에 언론에 드러난 박근혜 후보의 행적을 기초로 평가하였음.

가. 부양의무제 관련⁵⁾

1) 새누리당

세부 법안 (의안번호)	발의의원(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609)	박성호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16)	조명철 등 10인	자활사업 참가 상한연령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7)	서병수 등 11인	수급권자 가구 구성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한 명 이상이 장애등급 제3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

2) 민주통합당

세부 법안 (의안번호)	발의의원(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65)	이낙연 등 15인	-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 - 수급권자 선정 요건 중 부양의무자 관련 부분을 삭제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과 보장비용 징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378)	오제세 등 10인	-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인 자녀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을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401)	강창일 등 10인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판정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

4) 별첨 2. 관련 법안 참조

5) 새누리당 안 중에서는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내지 폐지에 관한 안이 없으므로 생략함.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1130)</p>	<p>남인순 등 18 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정의규정에서 배우자 조항을 삭제 -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 - 최저생계비 결정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과 보장비용 징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1632)</p>	<p>조경태 등 10 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전기·가스 요금 및 이동전화요금 감면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44)</p>	<p>김용익 외 12 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급권을 갖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함

3) 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 등(입법청원안 포함)

<p>세부 법안 (의안번호)</p>	<p>발의의원(수)</p>	<p>주요내용</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1464)</p>	<p>강동원 등 14 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선정요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을 삭제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법청원)</p>	<p>박원석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과 소득기준의 비합리성 개선 - 차상위 계층 재정의 및 개별 급여 지원 강화 - 강제근로를 통한 조건부 수급 폐지, 개인 특성에 맞는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빈곤개선 지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수급자 직접 참여 보장 및 수급자 권리보장 강화
--	--	---

나. 최저생계비⁶⁾

1) 새누리당 안

없음

2) 민주통합당 안

세부 법안 (의안번호)	발의의원(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01130)	남인순(18)	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 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함(안 제6조제1항).

4. 각 당의 빈곤/부양의무제 관련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가.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박근혜 후보

- 정책질의서에 대해 답변이 전혀 없음.
- 홈페이지 및 언론에 드러난 바로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을 외치고는 있으나 그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구호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음.
- 복지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광범위한 분야로서 각 주제별(장애, 빈곤, 여성, 의료 등등)로 현 상황의 문제점과 그 원인들이 모두 다르며 그 해법에 관한 논의도 다양함.
- 특히 빈곤 분야에 있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양의무제 및 최저생계비와 관련한 구

6)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최저생계비 관련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안이 유일함.

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2) 문재인 후보

○ 국민정서를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는 부정적임. 이는 위 후보가 사회보장정책을 대하는 방향성에 있어 여전히 기존 가부장적 가족 중심 부양이라는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3) 안철수 후보

○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 답변서에는 현행법에 기초한 수급권자 선정 절차 및 집행상의 문제(정부의 일방적 수급권 박탈 및 삭감)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근본적인 법률의 문제 및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정책 제안은 부족함.

나. 각 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새누리당

○ 부양의무제와 관련한 개정안은 서병수 의원안 뿐이고 그마저도 수급권자 가구 구성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명 이상이 장애 등급 3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어서 현 상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움.

○ 최저생계비 관련한 대안은 전혀 없음.

2) 민주통합당

○ 남인순, 이낙연 의원안이 부양의무자 정의규정에서 배우자 조항을 삭제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최저생계비 설정에 관하여 남인순 의원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임.

○ 그러나 발의의원수가 적고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3) 박원석 의원안

○ 부양의무자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차상위 계층 재정의 및 개별급여지원 강화등 가장 진일보한 개정안을 담고 있음.

5. 관련 법안 제안

현행법	민변(2011 개혁입법과제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 (생략)</p> <p>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p> <p>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p> <p>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p> <p>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p> <p>...</p> <p>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급여의 신청) ...</p> <p>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2조(정의) ...</p> <p>1.~4. (현행과 같음)</p> <p>5. "부양의무자"란 <u>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u></p> <p>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u>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u></p> <p>③ <삭제></p> <p>제21조(급여의 신청) ...</p> <p>⑥<u>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제3항에 정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u></p> <p>⑦ <u>보장기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나 부양의무자에</u></p>

<p>1.~3. (생략) ④⑤ (생략) <신설></p> <p>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관계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p> <p>제23조(확인조사) ...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p> <p>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p> <p>② ...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p>	<p><u>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에게 급여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중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 1. <u>부양의무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에 관련된 사항</u></p> <p>⑧ 보장기관은 <u>수급권자가</u> 제1항 및 ...</p> <p>제23조(확인조사) ... ③ 보장기관은 <u>수급자가</u> 제1항에 따른 ...</p>
--	--

<p>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p> <p>제26조(급여의 결정등) ...</p> <p>④ ...</p> <p>1.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p> <p>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강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p> <p>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신설></p>	<p>제46조(비용의 징수) ...</p> <p>④ <u>제1항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판정기준과 보장비용 징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⑤ <u>보장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에서 정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등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⑥ <u>제5항의 재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u></p>
--	--